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7326 취득세중과분일부반환청구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2.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세액반환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한 취득세 등 중과분 중 15,895,000원을 반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4. 준공업지역에 속하는 [redacted]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가 [redacted] 대 7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9. 1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합계 2,926.34㎡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467.37㎡를 인쇄공장으로, 지상 6층 342.88㎡를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및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지상 1층 내지 5층을 전부 임대주었다.

이 사건 사무실은 대표이사실과 직원 근무실로 구분되고, 대표이사와 영업부 직원 3명, 관리부 직원 3명, 디자인 직원 1명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지하 1층 공장에는 인쇄시설 등 기계장비, 간이사무실, 휴게실, 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고, 직원 9명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3,828,906,89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연면적 중 이 사건 사무실 사용면적(173.42㎡) 비율(5.926%)로 안분한 금액 226,907,6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 중과분 취득세 9,076,300원, 농어촌특별세 907,63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또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2,758,626,254원을 기준으로 사용비율(5.926%)로 안분한 금액 163,480,9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물 중과분 취득세 6,539,230원, 농어촌특별세 653,92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원고 2014.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인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무실은 공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중과대상이 아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3

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토지 및 건물 중과분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은 공장직원의 인사관리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뿐, 공장의 운영 및 지원만을 위하여 설치된 사무실로 볼 수 없고, 지상 1층 내지 5층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동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에서 중과대상으로 정한 본점사무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5.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세액반환 청구부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도 피고에게 기납부한 취득세 등 중과분 중 15,895,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세금의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그가 자진 납부한 세액에서 그 주장의 정당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부당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3

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세액반환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사무실은 도시형공장의 관리 및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6호는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법령에 관하여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25조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3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법상 공업지역 제외)에서의 공장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6호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동 시행규칙(2014.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부대시설이란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를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13조 제2항 제2호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2항의 예외로서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도시형공장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① 이 사건 사무실이 공장과는 별도로 법인 업무의 총괄,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본점사무소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3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② 이 사건 사무실이 산업집적법상 도시형공장에 속한 부대시설인 사무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무실의 성격에 관하여

(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22 판결 참조), 사무소가 본점사무소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장의 관리, 복리후생을 위한 부대시설에 불과한지는 사무소의 업무, 인력배치, 면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사무소가 공장 운영과 필수불가결한 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목적은 인쇄제조, 인쇄기획, 출판, 부동산임대,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 판촉물 도소매 등으로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무실에서 제조업 외에도 법인등기부상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상 1층 내지 지상 5층에 대한 임대사업도 관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업무전반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 영업부, 관리부, 디자인 부분을 두고 있고,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점, 그런데 지하 1층 공장에는 9명이 근무하고 있어 근무인력 측면에서 이 사건 사무실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공장이 위치한 지하 1층 면적은 467.37㎡이고, 이 사건 사무실이 위치한 지상 6층 면적은 342.88㎡이므로, 면적상 이 사건 사무실이 공장에 부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지하 1층 공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3

에는 이 사건 사무실 외에도 별도의 간이사무실, 휴게실,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공장의 업무는 간이사무실에서 처리가 가능한 점, ⑤ 지상 6층에 위치한 이 사건 사무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한 공장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무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한 공장과 별도의 시설로 본점사무소이고, 공장 관리·지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된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무실은 본점사무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세액반환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김형원

판사 손화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3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3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끝)